

제1차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 속 아동을 위한 실질적 성과 도출 촉구 공동성명서 (Joint Statement: The inaugural Global Dialogue on AI Governance must deliver for children)

유엔 회원국들이 '제1차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를 위해 모이는 가운데, 아동의 권리와 목소리가 논의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¹⁾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 채택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원칙·약속·지침은 이미 충분하다.²⁾ 전 세계의 기관, 전문가, 아동권리 옹호자들은 AI 시대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제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³⁾

국가들은 국제법에 따라 디지털 세계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인해 왔다.

5년 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5호는 AI를 포함한 디지털 세계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했다.⁴⁾ 이후 추가적인 글로벌 문서들(유엔 사무총장 산하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인류를 위한 AI 거버넌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안 78/187, 그리고 인공지능과 아동 권리에 관한 공동성명)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즉, 아동의 권리가 AI 거버넌스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이다.

각국 정부는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규제, 강력한 안전장치, 그리고 실효성 있는 책임 메커니즘을 통해 약속을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AI 거버넌스에서 아동은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새로운 기술을 가장 빨리,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AI 전략 및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⁵⁾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AI 시스템은 이미 아동의 삶을 형성하고 있다. 아동이 접하는 정보, 관계, 교육, 이용하는 서비스, 그리고 아동에 관해 내려지는 결정들이 모두 AI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 AI가 사회에 더욱 깊숙이 내재됨에 따라, 아동의 권리·안전·복지·발달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AI 시스템에 내재되어야 한다.

AI와 아동 권리

AI는 아동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빈곤, 장애, 지리적 여건, 차별로 인한 장벽에 직면한 아동들에게 학습, 창의성, 소통, 그리고 서비스 접근을 지원할 수 있다.⁶⁾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AI 시스템은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훨씬 앞지르는 속도와 규모로 배포되고 있다. 시스템이 아동을 고려하여 설계·검증·관리되지 않을 경우, 프라이버시, 안전, 건강, 교육, 정보 접근, 공적 생활 참여를 포함한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상업적 이익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으며, 그 결과 아동은 심각하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 1) Our use of the terms “child” or “children” refers to all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as defin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 1.

2) From the African Union’s [Continent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and the European Union’s [AI and Digital Services Acts](#) to the [Hiroshima Process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rganizations Developing Advanced AI Systems](#) and the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3) [Joint submission to Global Digital Compact](#). / [UNCRC General comment No. 25 5th Anniversary Joint Letter](#).

4) [UNCRC General comment No. 25](#), paras. 4 & 17.

5) UNICEF, [National AI strategies and children](#)

6) Stoilova, Livingstone, & Atabey, [Children’s rights in the age of generative AI: perspectives from the global South](#).

개인정보 침해: 아동의 개인정보는 일상적으로 수집·공유·프로파일링되며 AI 시스템 훈련에 활용된다. 아동의 이미지, 음성, 행동, 상호작용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정보가 아닌 상업적 자산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이 거의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시스템에 아동 데이터가 활용되는 현상은 프라이버시, 책임성, 데이터 주권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⁷⁾

건강 및 복지: 참여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AI 시스템은 아동의 발달적 취약성을 이용할 수 있다. AI의 장시간 사용이나 감정적 의존을 유도하는 기능은 정체성 형성, 정신 건강,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범용 AI 챗봇이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동반자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제시될 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⁸⁾

허위정보 및 역정보: AI는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허위·오해를 유발하는 유해한 콘텐츠를 생성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 추천 시스템은 정확한 콘텐츠보다 관심을 끄는 콘텐츠에 보상을 주는 경우가 많아, 아동이 허위정보·역정보·극단주의 콘텐츠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⁹⁾

편향 및 차별: 편향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로 훈련된 AI 시스템은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이미 장애이나 배제에 직면한 아동들(여아, 장애 아동, LGBTQI+ 아동, 소수 공동체 아동, 빈곤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¹⁰⁾

교육적 영향: 교육 분야에서 AI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비판적 사고·사회적 발달·교육 성과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AI 도입은 기술 발전 자체를 이유로 하기보다, 교육적 효과에 관한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¹¹⁾

형평성 및 접근성: AI에 대한 접근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강력한 보호 조치 없이는 AI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아동을 새로운 형태의 감시, 착취, 차별, 조작에 노출시킬 수 있다. 동시에, 수백만 명의 아동이 여전히 인터넷 접속, 디지털 리터러시, 언어 접근성, 포용적 교육에 대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

안전 및 존엄성: AI 도구는 비동의 영상, 아동의 딥페이크 누드 이미지,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규모와 속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¹²⁾

이러한 위험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아직 발달 중에 있는 아동에게 특히 심각하다. 유해한 자동화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방안을 찾는 데 필요한 경험·지식·권한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³⁾

7) Amnesty International, Unlawful by design: Exposing the human rights costs of generative AI. / 2025 G7 Data Protection and Privacy Authorities Roundtable Statement. / Human Rights Watch, Children's Personal Photos Are Powering AI Exploitation.

8) 5Rights, Disrupted Childhood: The cost of persuasive design. /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De Freitas, How AI Chatbots Try to Keep You From Walking Away. / Shasha et al, Playing With Danger: A Taxonomy and Evaluation of Threats to Smart Toys. / Bernstein, From bans to recalls: A public health framework for AI companion bots.

9) UNICEF, Digital misinformation/disinformation and children, p. 11. / UNICEF, Generative AI: Risks and opportunities for children. / Vaidhyanathan, Making Sense of the Facebook Menace. / Vosoughi, Roy, & Aral, The spread of true and false news online.

10) Stoilova, Livingstone, & Atabey, Children's rights in the age of generative AI: perspectives from the global South, pp. 10-11.

11) Atabey, Sylwander, & Livingstone, A child rights audit of GenAI in EdTech. / Burns et al., A new direction for students in an AI world: Prosper, prepare, protect. / UNCRC General comment No. 25, para. 103.

12) 5Rights, Grok AI fails child safety: companies must build safely or face consequences.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Children and deepfakes.

13) 5Rights, Children & AI Design Code, pp. 51-54.

기본 원칙

우리는 더 이상 아동이 AI 개발·배포 경쟁의 부수적 피해자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아동 권리 침해는 기술발전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대가가 아니다. 글로벌 AI 경쟁에서 아동은 검증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은 AI의 실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 결과는 진보가 아닌 피해이다. 기술발전이 아동의 상업적 착취와 프라이버시·주체성·비판적 사고의 저해를 악화시키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AI가 제기하는 위험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해결책도 마찬가지이다. 이전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AI는 흔히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기 전에 대규모로 배포된다. 지나치게 자주, 상업적 유인이 책임성보다 우선되어 있다.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단순한 원칙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AI 시스템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설계되고 독립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아동에 의해 사용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각국 정부, 규제 당국, 입법부¹⁴⁾는 AI 시스템의 개발·배포·사용 전 과정에 걸쳐 안전장치를 시행함으로써 국제법상의 의무와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에 따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부모와 아동이 AI 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는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책임은 이러한 기술을 구축하고, 배포하고, 이윤을 취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야 한다. 기업들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시장 출시 전에 입증해야 한다.¹⁵⁾

권고사항

전 세계 아동들은 각국 정부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아동의 프라이버시·안전·권리가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연령 적합한 설계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¹⁶⁾

‘제1차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는 광범위한 합의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은 다음을 이행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전 영향평가 도입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은 시장 출시 전에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제품 설계 단계부터 기본값으로 적용하고, AI 개발·유통 전 과정에서 아동권리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사전에 식별된 위험을 출시 전에 반드시 해소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¹⁷⁾ 아동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과 정부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¹⁸⁾

2. 아동 착취 금지

각국 정부는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조작적 설계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아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불건전한 의존을 유도하는 서비스(의인화 챗봇, 아동 성착취물 생성 AI 등)는 기업이 아동 안전에 대한 존중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¹⁹⁾ 또한 아동의 이미지·음성·생체정보·학습 데이터·행동 데이터가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 엄격한²⁰⁾ 필요성 검토, 아동권리 보호장치, 실효적인 감독 없이 AI 학습에 활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책임성 확보

기업이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²¹⁾

14) [Joint Statem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ights of the Child](#), para. 1(c).

15) UNICEF & UN Human Rights, [Taking a Child Rights-Based Approach to Implementing the UNGPs in the Digital Environment](#). / UN Global Compact Network German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Recommendations for companies](#).

16) Generation Unlimited, [Statement from Children and Young People for a Safe, Inclusive and Empowering AI Future](#). / [Outcome Statement: Children Global AI Summit on Africa](#). / Stoilova, Livingstone, & Atabey, [Children's rights in the age of generative AI: perspectives from the global South](#). / Stakrud et al., [European children's use and understanding of generative AI: EU Kids Online 2026](#). / [Me & AI Children and young people's report](#) [forthcoming].

4. 무단 추적 및 감시 금지

특히 상업적·교육적·돌봄 환경에서의 아동의 온라인 활동을 동의 없이 들여다보거나 추적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²²⁾

5. 규제 감독 강화

기업이 AI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공정성·투명성·책임성·감독에 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²³⁾ 이를 위해 기업이 최고 수준의 프라이버시·안전·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기술 표준·산업 규범·서비스 약관을 마련·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포함된다.²⁴⁾

6. 보호 사각지대 해소

국가나 AI 유형에 따라 아동 보호 수준이 달라질 경우, 그 빈틈을 통해 아동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²⁵⁾

7. 투명성 확보

기업이 아동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약관을 연령에 적합하고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²⁶⁾

8. 피해 구제 강화

기업(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가)은 아동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제공하고, 아동 친화적인 사법절차를 보장 해야한다.²⁷⁾

9. 아동 참여 촉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의 거버넌스·설계·개발에 아동이 안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의 의견이 적절히 고려되도록 해야한다.²⁸⁾

10. AI 리터러시 강화

안전성과 유익성이 입증된 AI의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아동이 AI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대부분의 AI 시스템에 내재된 상업적 활용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기반의 비판적·기술적·윤리적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사, 부모 및 보호자에게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²⁹⁾

논점은 AI 기업이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의무와 이미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17) [UNCRC General comment No. 25](#), paras. 23, 38, 39, 70, 73, 88, 110, & 116. / [Joint Statem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ights of the Child](#), 1(e), 1(h), 3(e), & 4(d).

18) [UNCRC General comment No. 25](#), paras. 15 & 22.

19) [UNCRC General comment No. 25](#), para. 62.

20) [UNCRC General comment No. 25](#), paras. 42, 69, 70, & 71. / [Joint Statem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ights of the Child](#), para. 5(d).

21) [UNCRC General comment No. 25](#), paras. 36, 37, & 54.

22) [UNCRC General comment No. 25](#), paras. 75 & 119.

23) [UNCRC General comment No. 25](#), paras. 39 & 70. / [Joint Statem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ights of the Child](#), paras. 3(c & d).

24) [UNCRC General comment No. 25](#), paras. 24, 39, 56, 74, & 124.

25)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 2. / [UNCRC General comment No. 25](#), para. 11.

26) [UNCRC General comment No. 25](#), paras. 39 & 59.

27) [UNCRC General comment No. 25](#), paras. 36, 44, 45, 46, 48, 49, & 72. / [Joint Statem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ights of the Child](#), paras. 1(i) & 5 (a).

28) [UNCRC General comment No. 25](#), paras. 16-18. / [Joint Statem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ights of the Child](#), paras. 6(b) & 8 (a & b).

29) [UNCRC General comment No. 25](#), paras. 21, 104, & 105.